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산 립 교 육 의 활 성 화 에 관 한 법 률
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,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8260호, 2021. 6.15.)됨에 따라 지정 취소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,

산림교육 활성화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을 확대하고,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신설(안 제10조제1항제2호) 및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마련(안 제10조제2항, 별표1의2)

- 평가계획 미수립, 출결관리 등 양성교육 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
-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처분기준(경고, 시정명령, 지정취소)을 정함

나. 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확대(안 제15조제1호 및 제5호)

- 종전의 지정대상을 ‘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’에서 ‘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’으로 명확히 함
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대상으로 확대

다. 업무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(안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)

-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·관리,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의 운영·관리 업무에 대한 위탁 범위 확대

라. 과태료 부과기준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(안 제20조 별표5)

-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붙임 1 개정문

대통령령 제 호

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평가계획을 미수립하거나 출결관리 등 양성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

②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

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

5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
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·관리

3.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의 운영·관리

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5 제1호가목 전단 중 “**부과기준**”을 “**가중된 부과기준**”으로 하고, 같은 목 후단 중 “**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**”를 “**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**”로, “**한 날과**”를 “**받은 날과 그 처분 후**”로, “**적발한**”을 “**하여 적발된**”으로, “**하여 계산한다**”를 “**한다**”로 하며, 같은 호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다목(중전의 나목)3) 중 “**법**”을 “**위반행위자가 법**”으로, “**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**”을 “**위하여 노력한 사실**”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과태료 금액란 다목 중 “**법 제12조제3항**”을 “**법 제12조제5항**”으로 한다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이 경우, 적발된 날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의2]

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지정취소 등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2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.

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
2. 개별기준

위반내용	관련법규	처분기준		
		1차 위반시	2차 위반시	3차 위반시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7조 제2항제1호	지정취소		
나. 법 제7조제4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	법 제7조 제2항제2호	시정명령	지정취소	
다.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 이내에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	시행령 제10조 제1항제1호	시정명령	지정취소	
라.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평가계획을 미수립하거나 출결관리 등 양	시행령 제10조 제1항제2호	경고	시정명령	지정취소

성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				
마.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지정받은 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거나 지정받은 교육과정과 달리 운영한 경우	시행령 제10조 제1항제3호	경고	시정명령	지정취소
바.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·자료제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·기피·방해한 경우	시행령 제10조 제1항제4호	경고	시정명령	지정취소

[별표 5]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20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**가중된 부과기준**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**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**

나. **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이 경우, 적발된 날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.**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**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**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2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------	--------	--------

신·구조문대비표
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 을 받지 않은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	법 제26조제2항 제1호	10	15	20
나.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6조제2항 제2호	10	15	20
다.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6조제2항 제3호	10	15	20
라.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한 경우	법 제26조제1항	100	300	500
마.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26조제2항 제4호	10	15	20
바. 법 제1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·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6조제2항 제5호	10	15	20
사.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26조제2항 제6호	10	15	20

현행	개정안
제10조(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의 지정 취소) 법 제7조제2항제 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1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0조(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의 지정 취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평가계획을 미수립하거나 출 결관리 등 양성과정을 부실하 게 운영한 경우</u>
2.·3. (생략) <u><신설></u>	3.·4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 ② <u>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별 표 1의2와 같다</u>
제15조(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) 법 제13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 1. <u>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</u> 2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5조(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 1. <u>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</u> 2. ~ 4. (현행과 같음) 5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

	<u>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</u>
제18조(권한·업무의 위임·위탁)	제18조(권한·업무의 위임·위탁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2. <u>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 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· 관리</u>
<u><신설></u>	3. <u>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산림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의 운 영·관리</u>
2. ~ 4. (생략)	4. ~ 6. (현행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	
연락처	(042) 481 - 8869